

Ferrini 대 독일연방공화국
(판결No5044/2004)
이탈리아 대법원(전원합의체) 2004.3.11
(재판장, Carbone)

절차의 경위

1 Luigi Ferrini 씨는 1998.9.23, Arezzo 법원에 제출한 서면으로 독일연방공화국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이 소송은 1944.8.4 Arezzo 현에서 독일군에 의해 붙잡혀, 그 후 독일로 끌려가 독일 기업에서 '강제'노동자로 사역된 것으로 인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다. 원고는 1945.4.20 까지 Reimagh 기업 (헤르만 괴팅 제국 공업소)와 Messerschmitt 사가 항공기, 미사일, 기타 전쟁무기를 제조하고 있었던 Kahla 멸종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탈리아 법원에는 이 문제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 문제에 대한 원고의 모순된 설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1.1 Arezzo 법원은 2000.11.3 판결로 원고의 청구 내용은 외국이 그 주권 행사로서 행한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분쟁은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 규칙에 따라 영역 국가의 관할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은 이탈리아 법제도의 관할 외라고 선언했다.

1.2 Firenze 항소법원은 하급심이 이미 나타낸 판단을 반복하여, 특히 이탈리아 법원이 이 사건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근거는 찾아낼 수 없다고 해서 Ferrini의 항소를 기각했다.

-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항상 제공되는 지침에 따르면 1968.6.27 서명된 민사 및 상사사건의 관할권 및 재판의 집행에 관한 브뤼셀조약 (이하 '조약')은 국가 권력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에 수반하는 사건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도 그 내용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에 적용되며, 어쨌든 이를 규범으로서 직접 적용할 여지가 없다.

1.3 Ferrini 의 이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장에 기재된 4 가지 이유에 의거하고 있다.

판결 이유

2 조약 제 1 조¹, 제 5 조 (3)² 제 57 조³ 위반 또는 잘못된 적용을 주장하는 제 1 의 상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조약에 규정된 관할권 결정 기준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이탈리아 법원의 관할권을 부정한 원판결을 비판한다.

- 이 사건 분쟁은 체약국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다른 체약국 (독일) 사이의 것이다. 따라서 분명히 이 사건은 조약의 영역적 적용범위에 속한다.
- 손해배상청구는 이탈리아 영토에서 발생한 사건에 유래한다.
- 이탈리아법과 독일법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 소송'으로 되어 있다.
- 조약의 조항은 국가면제 규칙을 포함한 국제관습법 규범에 우월한다.
- '범죄 또는 준 범죄 사실'에 대해 규정하는 제 5 조(3)의 기준에 따르면 어느 체약국에 거주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당사자가 거주하지 않는 체약국이라 하더라도 범죄 행위가 행해진 국가의 법원에서 고발당한다.

2.1 위 주장에는 분명히 이유가 없다.

유럽사법재판소가 거듭 확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각국의 정부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주권적 행위에는 조약 (그 내용은 2000.12.22 유럽 의회에서 제정된 EU 규칙 44/01 에 의해 덴마크를 제외한 모든 EU 가맹국에서 국내법화 되고 있다)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기관이 주권 행사로서 행한 것이 아닌 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상' 청구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조약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1993.4.21 판결 C171/91, 1980.12.16 판결 C814/79, 1976.10.14 판결 C29/76)

3 제 2 항에서 설명한 이유로 제 1 의 상고 이유는 이유가 없는데, 이는 법원이 독일에

다음의 각주는 모두 역주이다.

¹ 제 1 조 이 조약은 법원의 성격을 불문하고 민사 및 상사 사건에 적용된다.

이 조약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1 자연인의 지위 또는 법적 능력, 혼인 관계, 유언, 상속에서 발생한 재산권
- 2 파산, 지급 불능의 회사 또는 기타 법인의 청산 절차, 중재, 화해와 유사한 절차
- 3 사회보장
- 4 중재

² 제 5 조 당사국에 거주하는 자는 다른 당사국에서

3 불법행위, 범죄행위 또는 준범죄행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불법행위지의 법원에 고소된다.

³ 제 57 조 이 조약은 당사국이 체결하고 또는 체결 예정의 조약이며, 특정 사항에 대한 관할권 및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규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조약의 적용 범위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약 추가의정서 제 2 조 및 제 3 조 위반을 주장하는 제 3 의 상고 이유에 그대로 해당한다.

실제로는 국내 법원이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 의무인 경우조차도 회부의무는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사건은 항소법원이 최종심으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EC 조약 제 234 조 최종 절에 규정된 원칙의 적용 조건에 구속되지 않아서 회부 의무가 없다). 모든 가맹국에서 유럽법이 올바르게 통일적으로 적용될 것을 확보할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최종심 법원조차도 답변 내용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분명한 경우에는 법 해석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견해를 조회하기 위한 회부를 하지 않다는 선택을 항상 적법적으로 할 수 있다. (유럽사법재판소 1982.10.6 C283/81, 1974.1.16 C166/73, 1963.3. 27 합병 사건 28-30/62, 대법원 1996.11.22 No10359)

4 판결의 아래와 같은 판단에 대해 상고인이 헌법 제 10 조⁴ 및 제 24 조⁵ 위반을 주장하는 제 2 및 제 4 의 이유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 국가면제 원칙은 관습국제법의 일반 원칙으로서의 성격과 지위를 가진다.
- 이 원칙은 강행규범 위반의 경우, 보다 구체적으로는 그러한 위반이 인간의 존엄과 불가침의 권리와 관련할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5 상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헌법 제 10 조 (1)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제도로 도입된, 타국에 대한 재판권 행사를 자제할 의무를 각 국가에 부과하는 관습국제법 규칙의 존재와 효력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다만,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점차 제한되어 가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00.8.3 대법원 전원합의체 No530 1996.2.3 No919). 상고인의 이의는 이런 의미에서 분명히 근거가 없다.

6 국가면제 규칙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다른 각도에서 더욱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 No530/2000 판결에서 이 법원은 북대서양 조약에 따른 미군 항공기의 이탈리아 영토

⁴ 제 10 조 이탈리아 법질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의 원칙에 따른다.
외국인의 법적지위는 국제규범 및 국제조약에 따라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이탈리아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민주적인 제 자유의 유효한 행사를 자국에서 방해되는 외국인은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공화국의 영토 내에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치 범죄로 인한 외국인의 인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⁵ 제 24 조 누구든지 자신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변호는 절차의 모든 상태와 단계에 있어서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다.
빈곤자에 대하여 그를 위한 특별한 제도에 의해 모든 법원에서 소를 제기하고 방어할 수단을 보장한다.
법률은 재판의 오류에 대한 보상에 관한 조건 및 방법을 정한다.

내에서의 방위연습활동에 의한 주민의 육체적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는 것을 요구되었다.

법원은 민사 소송에서의 면제는 외국 주권을 ‘즉시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에 한정된 것을 인정하여 그들 활동과 ‘공법의 영역’과의 관계와 ‘국가의 제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이러한 활동이 ‘기본적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의해 ‘예외의 성격과 범위를 추정’할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점에 대해 법원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유해한 가능성이 있는 활동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한정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주권적 활동이 영역국가의 재판권을 초월하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국가방위 목적을 위한 군대의 군사 연습은 ‘국가의 본질적인 공공 목적을 대표’하는 ‘의심할 여지없이 본질적으로 주권 행위’이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대법원 1995.12.15 McElhinney 사건 판결도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한 아일랜드공화국 시민이 아일랜드 법원에 영국을 상대로 아일랜드공화국과 북아일랜드 국경을 경비하는 영국 병사에 기인한 PTSD 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경을 넘었을 때 McElhinney 씨의 자동차가 영국 병사와 조우했다. 영국 병사는 국경을 넘는 그를 추적하여 몇 차례에 걸쳐 발포했다. 그 중 3 차례는 아일랜드 영토 내에서의 발포였다. 그를 구속한 후 영국 병사는 그에게 총을 들이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총은 불발이었다. 법원은 병사는 국경관리 활동에 고유한 권한을 행사하며 행동했는데, 그것은 피고 국가의 주권 행사에 귀속되므로 영국은 국가면제를 향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이 판결에서 앞으로 검토할 견해에 의해 2001.11.21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McElhinney v. Ireland)에서도 지지되었다. (원고는 아일랜드가 사건에 관한 모든 관할권을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원고의 적정절차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유럽인권조약 제 6 조(1)⁶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

7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Ferrini 가 제기한 주장은 (사실은 의문의 여지없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독일에 의한 행위는 전쟁 수행 과정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국가주권의 표현인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실제로 고려해야 할 문제는 앞에서 검토한 문제와는 달리 관습국제법의 문맥에 있어서 극도로 심각하고 개별 국가의 이익을 넘을 정도로 보편적 가치에 유해한 국제범죄의 유형에 속하는 행위에 관한 경우에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이다.

7.1 물론 전쟁중의 활동으로 그러한 행위가 행해지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⁶ 1 모든 사람은 그 민사상의 권리 의무의 결정 또는 형사상의 죄의 결정을 위하여, 법률로 설치된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원에 의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정당한 공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하 생략).

예기치 못한 사태를 일으킨다. 이 법원의 2002.6.5 전원합의체 판결 No8157 은 '활동 범위를 정한 보호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투행위 수행중의 국가에 의한 '정치적' 기능의 발현으로서의 행위는 어떠한 사법통제에서도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이 원칙을 적용하여, 이 법원은 유고슬라비아공화국에 대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공습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몇 명의 시민이 사망한 비군사적 표적에 대한 파괴행위에 관한 이탈리아 총리와 국방장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결론 지었다.

하지만 공권력의 최고 의사 결정에 기초한 이러한 활동은 심사 대상 외라는 것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은 그러한 활동 과정에서 행해진 가능성이 있는 범죄나 그 범죄의 책임에 대한 조사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다. (헌법 제 90 조⁷ 및 제 96 조⁸, 1953.3.11 헌법적법률 No1 제 15 조(1), 1962.1.25 법률No20 제 30 조). 게다가,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그 권리의 완전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를 '국제범죄'로 보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범'은 이탈리아 헌법 제10조(1)의 순응 원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탈리아 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그렇게 하여 범죄적 동기와 비난을 받아야 할 행위로 인해 초래된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사법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앞에서 살핀 여러 판결에 포함된 원칙은 이 사건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7.2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고인의 배상청구 원인 사실은 그의 구속과 독일 기업에서의 '본의이 아닌 육체노동'을 위한 독일 이송을 둘러싼 것이다.

1946.12.11 유엔총회 결의 95-1 은 이송과 강제노동을 모두 국제법에서의 범죄로서 '전쟁범죄'로 열거한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헌장 및 판결에서 언급된 국제법의 원칙을 '승인'했다. 1945.8.8 런던에서 서명된 헌장 자체가 '노예노동을 위한 이송' (제 6 조(b))⁹이 '전쟁범죄'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

⁷ 제 90 조 대통령은 그 직무를 행사할 때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반역 또는 헌법에 대한 침해의 경우 외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통령은 그 경우는 국회의 합동 회의에서 그 의원의 절대 다수로 탄핵된다.

⁸ 제 96 조 내각 총리 및 각 장관은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국회의 합동회의에 의해 탄핵된다.

⁹ 제 6 조 헌장 제 1 조에서 언급된, 유럽 추축국가들의 주요 전쟁범죄자의 재판 및 처벌을 위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법원은 유럽 추축국가들을 위해 개인으로서 또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다음 각 범죄 중 하나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하고 또한 처벌할 권한을 가진다. 다음에 드는 각 행위 또는 그 중 하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로 하여 이에 대해서는 개인 책임이 성립한다.

b 항 - 전쟁범죄

즉, 전쟁 법규 또는 관례에 대한 위반. 이 위반은 점령지 소속 또는 점령지 내의 일반 인민의 살해, 학대, 노예 노동 기타의 목적을 위한 이송, 포로 또는 해상에서의 인민 살해 또는 학대, 인질 살해, 공사(公私)의 재산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소가 1946.9.30 선고한 판결은 그러한 행위는 1907.10.18 헤이그에서 서명된 육전의 법규 관례에 관한 조약에 대한 과립치한 위반임을 강조했다. 이 조약의 부속서인 '육전의 법규 관례에 관한 규칙'은 '주민'에 대한 '사역'은 '점령군의 수요를 위해'로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52 조)¹⁰, 다른 목적을 위해 사역이 요구되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이 조항의 적용에 대해 뉘른베르크 피고 변호인은 교전국의 일부는 이 조약에 가맹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 조약 제 2 조¹¹에 의거하여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1939 (따라서 분쟁 시작 전)에 조약에 규정된 '규칙'은 모든 문명 국가가 승인하고 수용했으므로 국제관습법으로 간주된다는 이유로 이 항변을 각하했다.

7.3 강제 노동을 위한 이송을 '국제범죄'로 분류하는 것은 1950.6. 유엔 국제법위원회에서 채택된 국제법원칙의 원칙 6¹², 1993.5.2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927/93 제 2 조 및 제 5 조,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규정, 1994.11.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955/94,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규정, 1998.7.17 139 개국 (그 중 120 국이 비준)이 서명하고 2002.7.1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약탈, 도시와 마을의 자의적인 파괴 또는 군사적 필요에 의해 정당화되지 못하는 황폐화를 포함한다. 단지, 이들에 한정되지 않는다.

¹⁰ 제 52 조 현품징발 및 사역은 점령군의 필요를 위한 것이 아니면 시·읍 또는 주민에 대하여 이를 요구할 수 없다. 징발 및 사역은 그 지방의 자력에 상응하여야 하며, 주민들에게 그 본국에 대한 군사작전에 가담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성질의 것이어야 한다.

¹¹ 제 1 조 체약국은 그 육군에 대하여 이 조약에 부속된 "육전법 및 관습에 관한 규칙"에 합치되는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 2 조 제 1 조에서 언급된 규칙에 포함된 규정은 2 개국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의 전쟁의 경우에 체약국에 대하여만 구속력이 있다. 체약국간의 전쟁에서 어느 한 비체약국이 교전국의 일방에 가담한 때부터 이들 조항은 구속력이 정지된다

¹² 원칙 VI 다음에 정하는 범죄는 국제법상 범죄로서 처벌된다.

(a) 평화에 대한 죄

(i) 침략전쟁 또는 조약, 협정, 보증을 위반하는 전쟁의 계획, 준비, 시작 또는 수행

(ii) (i)에 기재된 어느 하나의 행위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계획 또는 음모에 대한 참여

(b) 전쟁범죄

점령지의 민간인 학살과 학대, 노예노동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한 국외추방, 전쟁포로 선원 살해나 학대, 인질 살해, 공사(公私)의 재산 약탈, 도시·마을의 부당한 파괴, 군사적 필요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파괴 등을 포함한 전쟁법이나 관습에 대한 위반. 다만, 이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c) 인도에 대한 죄.

모든 민간인에 대해 행해진 살인, 멸종, 노예화, 이송 기타 비인도적 행위 또는 평화에 대한 죄 또는 전쟁범죄의 실행 또는 이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유로 인한 박해.

7.4 이와 같이, 뉘른베르크 판결이 단언한 것과는 별도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관습법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독일도 그러한 범죄의 중대성을 승인하고 있다. 독일은 나치스에 의해 끌려가서 '노예 노동'에 종사하게 된 사람들에게 준 고통을 인식하며 이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지기 위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고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거주지를 불문하고 구체적인 청구 절차를 우선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한 '기억·책임·미래'라는 기금을 '본의가 아닌' 역무로 이익을 얻은 독일 기업과 협력하여 설립했다(2000.8.2 BGBl I (연방법령공보) 2000. I 1263 법률 제 11 조 참조). 이 법률은 더 하나의 중요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은 단순하고 고립된 에피소드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독일 국가의 단호한 결의로 추구된 정확한 전략에 대응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있다.

8 그리스 대법원은 제 2 차 세계대전 중에 그리스 영토에서 실행된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군사 행동에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관계가 없는 약 200 명을 보복을 위해 살해했음)로 인한 손해배상을 그리스 시민이 독일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외국이 민사 소송에서의 면제에 의해 이익을 받는 것을 부정했다(2000.5.4 디스토모 사건 판결¹³). 법원은 다른 주권국가의 영역 내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해당 국가의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국가는 민사 재판에서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 1972.5.16 체결된 유럽국가면제조약 제 11 조에 주로 의거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이 규칙은 주권행위로서 실행된 불법행위에도 적용되어, 관습적으로 존재하는 원칙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는 그리스 같은 국가에서도 유효이다.

8.1 하지만 법원의 이 조문에 대한 언급은 결코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판사도 인정하는 것처럼, 그것은 무력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조약 제 3 조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가능성이 있다는 난점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기본적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범 위반은 국제법에 규정된 이익과 특권의 묵시적 포기임을 근거로 이 난점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독일은 면제를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8.2 하지만 이 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이는 독일 측의 명확한 의도가 반드시 추정되는 상황이 아니다. 이러한 성질의 포기는 추상적인 추측이 아니라 명확하게

¹³ Prefecture of Voiotia v. Federal Republic of Germany

'포기'의 의도를 나타내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실에 의해 해석되어야 한다. 어쨌든 심각한 위반을 한 국가가 그 유죄를 확정시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어도 매우 어렵게 만드는 특권인 국가면제를 의도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판결이 의거하는 논의에는 분명히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그리스 법원의 결론은 오히려 앞에서 본 이유와 다른 이유로 뛰어난 것이다.

9 국제범죄가 '전 인류에 대한 위협이며, 평화로운 국제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것은 거듭 확인되고 있다 (헝가리 헌법재판소 1993.10.13 No53). 그들은 실제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형태의 범죄이다 (그 강도와 계통성이라는 점에서 유엔 국제법위원회가 2000.8. 채택한 국가책임조문 초안 제 40 조 (2)¹⁴참조). 그러한 권리는 국제질서의 핵심을 이루고, 국가면제 규칙을 포함한 기타 모든 조약과 관습법에 우월하는, 일탈을 허용되지 않는 규범에 의해 보호된다. (구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1998.12.10 153-5 Furundzija 판결, 2000.1.14 Krupeskić 판결 520 절¹⁵, 유럽인권재판소 2001.11.21 Al-Adsani 대 영국 판결 61 절¹⁶ 참조).

이런 이유로 그러한 권리는 불가침으로 간주되고 있다 (1968.11.26 유엔인권조약, 1974.1.25 유럽평의회조약 참조). 그리고 모든 국가는 그러한 위반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불문하고 보편적 관할권의 원칙에 따라 그 위반을 억압하는 것이 인정되어(Furundzija 판결 15~16 쪽 참조), 어떤 경우에는 국가는 그러한 위반을 억압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특히,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1949 제네바

¹⁴ '강행규범상의 의무 이행에 책임 있는 국가에 의해, 현저한 또는 조직적인 불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러한 의무 위반은 중대하다.'

¹⁵ 520 또한 국제 인도법의 대부분의 규범, 특히 전쟁범죄, 인도에 대한 범죄, 대량 학살을 금지하는 규범은 국제법의 강행규범, 즉 *jus cogens* 이며 일탈을 허락하지 않고, 최우선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이 분류에서 생기는 결과 중의 하나로서, 문제의 규범이 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조약 제 60 조에 규정된 일반적인 규칙과는 달리, 일방 계약국이 그 조약에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더라도 타방 계약국은 조약의 종료 또는 운용 정지를 위해 위반을 원용할 수 없다. 제 60 조 5 항에서는 이러한 상호주의, 즉 일방 계약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계약국도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원칙은 인도적 성격을 기지는 조약에 포함된 인간의 보호에 관한 규정, 특히 당해 조약에서 보호되어 있는 자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는 규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¹⁶ 61 이 법원은 이러한 문헌에 따라 고문 금지가 국제 법상 필수 규범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 사건은 Furundzija 과 Pinochet 같은 고문행위 용의자에 대한 개인의 형사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영역 내에서의 고문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 소송에서의 국가면제에 관한 것이다. 국제법에서의 고문 금지의 특별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의 문제로서 국가가 고문행위가 주장되고 있는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 민사 소송에 대한 면제를 더 이상 향수할 수 없다고 결론 지는 확고한 근거를 법원은 지금까지의 국제 문서, 사법 기관, 기타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언급되어 있는 주요한 국제 문서 (세계인권선언 제 5 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7 조, UN 조약 제 2 조 및 제 4 조)는 모두 민사 소송과 국가면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 4 조약 제 146 조¹⁷ 참조). 이 이유로 보편적 관할권의 원칙은 그러한 범죄로 인한 민사 소송에도 의심할 여지없이 적용된다.

이 결론은 이 같은 중대한 위반 행위는 비록 국가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불법행위와는 질적으로 달리, 더 엄격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는 확신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추세에 따라 Furundzija 판결은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던 국가에는 그 범죄에 의해 창출된 상황을 정당화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다 (155 쪽 참조). 같은 문맥으로 국가책임조문 초안은 국가가 위반에 의해 창출된 상황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적 수단을 통해 불법행위를 종료시킬 ‘의무’에 언급했다(제 41 조).

9.1 그런 범죄에 책임이 있는 국가에 국가면제를 인정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범죄에 대응하는 강제수단을 정당화하기 위한 핵심으로 간주되는 규범과 원칙에 대한 보호를 촉진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게 되고, 위 규범적 분석과 완전히 대립한다. 모두 구속력을 갖는 두 가지 법규범의 모순은 의심할 여지없이 최상위 규범을 우선하여 해결해야 한다. 이는 Al-Adsani 사건 반대의견 (8 대 9) 중에서 그런 상황에서 가해 국가는 국가면제를 향유한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강조되었다. Furundzija 판결에서도 같은 관점에서 ‘국내 차원에서’ 행해진 이러한 규범 위반의 결과의 하나로서 ‘외국 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9.2 국가면제 원칙에서의 일탈은 국제법의 어떠한 규범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근거가 박약한 견해이다 (Al-Adsani 판결 62 절, 2002.5.1 온타리오 항소 법원 Foushang Bouzari 대 이란 이슬람공화국 사건¹⁸ 63 절 참조).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 존중은 국제법질서의 기본 원리의 지위에 있다고 완전히 간주되어

¹⁷ 제 146 조 체약국은 본 조약에 대하여 다음 조에 규정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하도록 명령한 자에 대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약정한다. 각 체약국은 중대한 위반행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할 것을 명령한 혐의가 있는 자를 수사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자는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에 법원에 기소되어야 한다. 또한, 각 체약국은 희망이나 자국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자를 다른 관계 체약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다. 단, 관계 체약국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일단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각 체약국은 다음 조항에서 정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 이외에 본 조약 제 규정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조약 제 105 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는 정당한 재판과 변호가 보장되어야 한다.

¹⁸ 1993.6. 테헤란에 체류했던 Bouzari 는 대통령으로부터 석유·가스 매정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요구되었지만 거부했다. 그러자, 이란 국가 기관 요원이 집에 침입해 그를 납치해서, 몇 개월 동안 구금되었다. 다음 해 석방된 그는 유럽으로 피신하고 1998. 캐나다에 입국했다. 2000.11. 24, 온타리오 항소법원에 이란 이슬람공화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2.5.1, 법원은 국가면제를 적용하여 청구를 각하했다.

왔다(위 여러 사건 외에도 1949.4.9 ICJ 영국 대 알바니아 사건 판결, 1986.6.27 ICJ 니카라과에 대 한 군사적·준군사적 활동 사건 판결 219 절). 이러한 원칙이 특히 타국의 민사 재판권에서의 국가면제 승인을 포함한 국가의 '주권 평등'원칙과 같은 전통적인 국제법 질서의 핵심에 존재하는 다른 원칙의 적용 범위에 반영되지 않을 리가 없다.

사실, 두 가지 이상의 법적 규범은 서로 독립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명확화하고 보완하고 그 적용에 관해서는 서로 조건 지운다 (Al-Adsani 판결 55 절¹⁹ McElhinney 판결 36 절 참조). McElhinney 판결은 오로지 조약 규범에 대해 언급한 것이지만 조약 규범과 마찬가지로 법제도의 일부로서 결과적으로 제도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다른 규범의 문맥 속에 자리 매긴 경우에만 올바른 해석이 가능한 관습법의 해석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1948.12.10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 30 조²⁰ 참조).

10 이 법원은 국제범죄의 실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국가면제를 향유하는 국가의 권리가 최근도 인정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판결은 모두 법정지국 이외의 국가에서 행해진 불법행위를 둘러싼 사건에 관한 것이다 (Al-Adsani 사건, Bouzari 사건 이외에, 칠레는 피노체트 시대에 행한 범죄에 국제 책임을 진다고 판단되지만 영국 법원에 제소된 모든 배상청구에서의 면제를 주장할 수 있다는 Lord Hutton 에 의한 방론(傍論) 의견을 포함한 1999.3.24 영국 귀족원 피노체트 인도 결정 참조). 따라서 그들은 이 사건과는 다른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범죄 행위가 법정지국에서 행해지고 그 범죄 행위는 국제범죄로 간주된다는 상황에 특징 지어진다.

따라서 이들 판결에서 행해진 고찰은 이미 도달한 위 결론의 근거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이들은 명시적인 규범의 규정만이 국가면제의 원칙에서의 일탈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명제 (이 사건과는 달리 오로지 강제집행에서의 면제에 대해 판단한 유럽인권재판소 2002.12.12 Kalogeropoulou 판결에서 은근히 주장되고 있다)에 집약된다. 하지만 몇 번 반복되어도, 이 법원은 이 명제에 동의할 수 없다.

¹⁹ 55 이 법원은 그 다음에, 제한이 추구된 목적에 비례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조약은 1969.5.2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조약에 정해진 규칙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하며, 이 조약 제 31 조 §3 (c)는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모든 국제법의 관련 규칙'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 6 조를 포함한 이 조약은 진공 상태에서 해석할 수 없다. 법원은 인권조약으로서의 이 조약의 특별한 성격을 염두에 두고 국제법의 관련 규칙도 고려하여야 한다. 조약은 가능한 한 국가면제의 부여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조약이 그 일부를 구성하는 다른 국제법의 규칙과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²⁰ 제 30 조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에게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10.1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주장은 재확인된다. 게다가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일반적인 어프로치는 주권행위와 업무관리행위의 구별을 기준으로 도출되지만, 이는 이 사건과 같은 분쟁에는 부적절한 것은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이는 모두 피구속자에 대한 경찰관에 의한 고문에 대한 (따라서 주권의 실행에 귀속된) 사건인 Al-Adsani 사건이나 Bouzari 사건 판결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다만 이들 사건은 불법행위가 법정지국과 다른 국가에서 실행된 것을 이유로 법원은 국가면제를 인정했다.

실제로 영국과 캐나다에서 적용되는 규범으로는 외국이 신체 상해 및 재산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민사 소송에서의 면제를 이유로 저항하는 능력은 다른 기준으로 규정되고 있다. 1978 국가면제법 제 5 절은 '영국에서 행해진 행위나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국가면제법 제 6 절은 '캐나다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외국의 면제의 이익을 박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도 외와 같은 원칙이 채용되고 있는 것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 1976.6.11 발효하여 현재까지 영국 등 8 개국이 비준한 유럽국가면제조약
- 위 캐나다 이외에 미국 (1976 외국국가면제법 §1605 (5)), 남아프리카(1981 외국국가면제법 제 3 절), 호주 (1985 외국국가면제법)와 같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던 국가의 국내법.
-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국가면제조약 초안 제 12 조

유럽인권재판소 2001.11.21 McElhinney 판결의 판단과는 반대로, 문제의 규범은 오로지 외국 국가의 주권행위와 관련 없는 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분명히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법원의 견해는 유엔국가면제조약 초안 제 12 조는 '원래' 교통 사고와 같은 '보험을 들은 것에 적합한' 손해에 관한 것이라는, 국제법위원회 주석해설의 한 구절에 의거하고 있다(판결 38 절 참조). 하지만 Cafilisch 판사, Cabral 판사, Barreto 판사, Vajic 판사의 '반대의견'이 밝힌 바와 같이, 이 해설은 문제의 규범에 의한 국가면제 비적용을 포함한 '고의'에 의한 손해나 살인이나 정치적 암살 등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에 이르는 매우 넓은 문맥에 삽입되어 있다. 게다가 (우리의 목적을 위해 중요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 말하면) '인간의 신체적 완전성에 대한 공격'이나 '육체적' 성실의 상실이나 손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주권행위와 업무관리행위의 구별은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피고 대리인이 준비서면 9 쪽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주장은 제한 면제주의를 극복할 과정에 있다는 징후가 있다. 게다가 디스토모 사건 판결에 의하면, 이 기준은 관습법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해 행위의 성격을 바탕으로 한 기준은 더 이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10.2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에 기인하는 분쟁에 대한 이 기준의 관련성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1999.7.6 작성된 국제법위원회 국가면제 워킹그룹 보고서 (부록 9,10 참조)에서 언급된) 1976 미국 외국국가면제법 개정으로 더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외국의 국가면제를 부정하는 사유를 규정한 제 1605 절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한 것이다. 개정법은 특히 ‘고문, 학살, 항공 방해, 인질 납치’에 의한 사망 및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소송을 국가면제에서 제외했다 (반 테러와 실효적 사형법 제 221 절).

이 개정에 의한 제외 범위는 미국 국무부가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국가에 한정되어 있다. 그 결과, 한 국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국제 사회의 다른 모든 국가에 적용되어 있는 특권을 빼앗긴 국가라는 카테고리를 창설하는 것은 모든 국가가 법적으로 평등하며 그 '주권'에 고유한 모든 권리를 향유하면서 완전한 평등의 조건으로 서로 대우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국가의 '주권 평등' 원칙 (1970.10.24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우호관계원칙 선언)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도입에 대해 몇 가지 의심이 표명되었다.

위 규범 속에, 특히 심각한 범죄행위에 관해서는 외국의 국가면제 승인에 의한 국가 이익의 보호보다 기본적인 인권의 보호에 우선적 지위를 준다는 것의 확인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는 미국과 같이 최근까지 절대면제주의를 고집해온 국가에도 해당한다. 이는 이 원칙이 이미 많은 판결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의미 깊은 것이 된다. 2001 말 기준으로 미국 법원은 적어도 외국에 대하여 12 건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1997.12.17 *Alejandro 대 쿠바 공화국*²¹, 1998.3.11 *Flatow 대 이란 이슬람공화국*²², 1998.8.27 *Cicippio 대 이란 이슬람공화국*²³, 2000.3.24 *Anderson 대 이란 이슬람 공화국*²⁴, 2000.7.11 *Eisenfeld 대 이란 이슬람공화국*²⁵, 2000.9.21

²¹ 쿠바 공군기가 플로리다 해협에서 구조 활동에 종사하던 미국 민간 항공기를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한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쿠바와 쿠바 공군을 상대로 배상청구를 했다. 피고는 결석하여, 특정 테러 행위에 대한 면제를 부정하는 법률의 첫 적용 사례가 되었다.

²² 이스라엘 유학 중 타고 있던 버스에 벤이 충돌해서 폭사한 미국 학생의 부모가 폭파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란 이슬람공화국에 배상을 청구했다. 결석 판결을 받고 은행 계좌를 압류했지만 법원은 예금은 이란 정부의 것이 아니라는 은행의 항변을 받아들여 압류를 해제했다.

²³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에 의해 납치되어 장기간 구금된 Cicippio 씨의 가족이 납치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란 이슬람공화국에 정신적 손해 등의 배상을 청구했다. 1 심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가면제법이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외국 국가가 아니라 그 공무원이나 대리인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라고 해서 이란의 국가면제를 인정하고 2008 미국 국가면제법 개정의 계기가 되었다.

²⁴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납치되어 7년 가까이 구금된 언론인 Anderson 씨가 사건에 관여했다고 하는 이란에 대해 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는 이란의 동결 자산에서 추정 2600 만 달러의 배상금을 얻었다.

²⁵ 이스라엘에서 버스 승차 중 하마스의 자살 폭탄 테러에 의해 폭살된 미국 국적 고고학 연구자 유족이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을 제소하여, 법원은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는 이란의 동결 자산에서 배상금을 얻었다.

Higgins 대 이란 이슬람공화국²⁶, 2000.6.25 Sutherland 대 이란 이슬람공화국²⁷, 2001.8.23 Polhill 대 이란 이슬람공화국²⁸, 2001.11.6 Wagner 대 이란 이슬람공화국²⁹, 2001.9.19 Mousa 대 이란 이슬람공화국³⁰, 2001 Jenco 대 이란 이슬람공화국³¹, 2001.12.5 Da Liberti 대 이라크 이슬람공화국). 이 중 3 건은 1998.9.23 이 사건 소송 시작 이전의 것이다. 위 여러 판결 외에도 로커비 폭파 사건의 영국 대 리비아 사건에 대해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 미국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한 1998.2.25 뉴욕 지방법원과 1998.12.15 제 2 순회항소법원 결정을 들 수 있다.

11 마지막으로 하나의 검토 과제가 있다. 그것은 국가 기관에 의한 국제범죄에는 기능적 면제 (functional immunity)³²가 분명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관한 조약 조항은 다의적이다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제 27 조는 이미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규정, 구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에 존재하는 원칙을 보장했다). 하지만 사법 실행에 관해서는 모두 국제범죄의 실행에 대하여 국가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은 1962.5.29 이스라엘 대법원 아이히만 사건 판결³³, 1980.5.30 미국 제 2 순회연방항소법원이 선고한 *Filártiga v. Peña-Irala* 사건 판결³⁴, 1995.4.12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이 선고한 *Xuncax v. Gramajo* 사건 판결³⁵, 1998.4.18

²⁶ 유엔 휴전 감시단의 일원으로 레바논에서 활동했을 때 헤즈볼라에 납치되어 교수형에 처해진 해병대 대령의 부인이 헤즈볼라에 자금 제공과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되었다.

²⁷ 1985, 헤즈볼라에 납치되고 6년 반 동안 구금되며 학대를 당한 농업식량 학부 대학 교수 Higgins 와 그 가족이 개정 후의 미국 국가면제법에 따라 헤즈볼라를 지원하는 이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되었다.

²⁸ 1987, 베이루트 대학 구내에서 헤즈볼라에 납치되고 약 3년간 감금되며, 학대를 당한 미국인 교수 Polhill 이 이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되었다.

²⁹ 1984, '이슬람 지하드'에 의한 베이루트 미국 대사관 폭파 사건의 14명 희생자 중 한명인 Michael Wagner (미국 해군 일등병조)의 유족이 테러를 지원했다고 해서 이란과 이란 정보안전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테러 지원국'에 의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살해'로서 국가면제가 부정되고 결석 판결로 청구가 인용되었다.

³⁰ 1994, 하마스의 노선 버스에 대한 자살 폭탄 테러에 의해 중상을 입은 이스라엘 거주 미국인 여성 Lisa Mousa 가 이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건.

³¹ 헤즈볼라에 의해 납치되어 1년 반 동안 감금·학대를 받은 Jenco 신부의 유족이 이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되었다.

³²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에 대한 면제.

³³ 유대인의 강제 수용소 이송을 지휘한 전 친위대 과장인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형사소송.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에 도망했다가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구속되어 비밀리에 이스라엘에 연행된 후에 기소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되었다.

³⁴ 고문으로 사망한 파라과이 시민의 유족이 미국으로 이주, 우연히 미국에 체류하고 있던 고문 실행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관할권을 부정하여 각하였다. 항소법원은 고문은 당사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국제인권법의 보편적으로 인정된 규범을 위반하여, 고문 실행자가 미국에서 발견되고 외국인에 의해 소송 절차가 진행된 경우, 미국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³⁵ 과테말라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선주민에 대한 학살, 살인, 실종, 광범위한 고문, 자의적인 체포를 계획하여

뉴욕 지방법원이 선고한 *Cabiri v. Assasie -Gyimah* 사건 판결³⁶을 상기하면 충분하다.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기능적 면제는 국가면제의 아종(亞種)이며, 소송 당사자가 국가면제를 회피하기 위해 국가 행위를 실행한 개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옳다면, 이 법원이 보기에는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개인에 대한 면제는 문제가 되는 행위가 국제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상황에서 다른 국가의 법원에서의 국가면제를 유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런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할 정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12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에서는 독일연방공화국은 이탈리아 법원에서 국가면제를 주장할 권리가 없고, 이탈리아 법원의 재판권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규범적으로는 이 소송이 시작되었을 때 이미 그러했다.

이 사건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가 이탈리아에서 행해진 것을 이 법원은 주목했다. 하지만 그런 행위는 국제범죄의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어쨌든 관할권은 보편적 관할권의 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상고를 인정하여, 이탈리아 법원의 재판권을 확인한다.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Arezzo 법원에 환송한다.

명령한 Gramajo 가 미국에 머물러 있었을 때, *Filártiga* 사건에서 제시된 원칙에 의거하여 제기된 손해배상소송.

³⁶ 미국에 거주하는 가나 공무원 Cabiri 가 가나에 소환되고 구속과 고문을 받은 것에 대해 수사를 지휘한 Assasie-Gyimah 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